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장려금 심사 통지서 번호								
장려금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제도개요	변경전 정년	변경후 정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내역					심사결과			
성명	생년월일	정년 도달일 변경전	변경후	재고용 기간	마지막 근무일	지급여부	지원 기간	지 원 결정액
합계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사유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